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932 발의연월일: 2024. 10. 28.

발 의 자:김민전·박정하·박덕흠

이헌승 · 김용태 · 박수민

김예지 · 김기웅 · 김태호

주진우 · 최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함)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음란물의 유통방지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한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제44조의7제1항제1 호의2, 제72조제1항제1호의3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의2(인공지능 생성물의 표시) 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한다)를 제작 또는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제작 또는 편집이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생성물마다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소프트웨어에 구현하여야 한다.
 - ②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이용하거나 이 와 유사한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부터"를 "제1항제1호·제1호의2, 제2호부터"로 한 다.

- 1의2.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제72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3.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

제7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제4호의3부터 제4호의 5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인공지능 생성 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3조의2(인공지능 생성물의 표
		시) 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
		하여 가상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
		능 생성물"이라 한다)를 제작
		또는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
		는 자는 제작 또는 편집이 이
		루어지는 인공지능 생성물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
		든 가상의 정보임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해당 소프트웨어
		에 구현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
		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전자
		적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	누구	든지	정보	통신밍	-을
통하	-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이] 해	당하	는 >	정보를	· 유통	-하
여사	는	아니	된다	-		

1. (생략)

<신 설>

2. ~ 9.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 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 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 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 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을 명할 수 없다.

③ ~ ⑤ (생 략)

등)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대상자의 동의 없
이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u>정보</u>
2. ~ 9.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제1</u>
호·제1호의2, 제2호부터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기 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의2. (생략) <u><신 설></u>

2. ~ 5. (생 략) 제76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 (생 략) <u><신 설></u>

4의2. ~ 4의4. (생 략)

5. ~ 25. (생 략)

④ (생 략)

제72조(벌칙) ①
1.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를 위반하여 사람의 얼굴ㆍ신
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
2. ~ 5.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u>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인공지
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
하지 아니한 자
<u>4의3.</u> ~ <u>4의5.</u> (현행 제4호의2
부터 제4호의4까지와 같음)
5. ~ 2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